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19나66257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19나6625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9가소140226 판결

전문

원고,항소인 A 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원

담당변호사 차연화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도명옥

변론 종결 2020. 6. 10

판결 선고 2020. 7. 8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9가소14022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 427, 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 원고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 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 피고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보험자이 다.

나. 피고차량은 2018 . 11. 17. 11: 1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IC 부근 합류도로의 합류구간이 끝나는 지점에서 본선의 4차로에 진입하면서 피고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본선 4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앞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한다).

다. 피고는 피고차량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합계 4, 758, 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를 상 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 심의위원회' 라 한다) 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심의조정을 신청하였다.

심의위원회는 2019 . 6. 3.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책임 비율을 30%대 70%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 6. 18. 피고에게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 427, 400원을 지급하 고,이의기간 내인 2019. 6.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5, 6,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 3, 4호증, 을 제 2내지 7호증의 각 영상,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가지급한 1,427,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합류도로는
본선과 합류하면서 사라지는 도로인 점, 합류도로에서 주통행로로 진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여 들어가려는 도로에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 지주의 깊게 살핀
후 진입하여야 하는 점, 피고 차량은 합류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갓길을 걸치고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무리하게 진로 변경을 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
다만, 본선을 따라 진행하던 원고차량도 합류도로의 차로 감소지점을 운전할 때 본선에 합류하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원고 차량 운전자는 전방우측에서 합류하려는
피고차량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감속하거나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 운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도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 확보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30% 대 70%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차량의 과실비율이 30% 미만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박태안판사 박성민판사 김연수